

# 동서울대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 내·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감시 및 관리업무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 인해 영상정보의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별표1]참조

##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운영계획의 수립) ①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동서울대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자·연락처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7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

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화상정보열람 등의 요청) ①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식에 의하여 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으며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

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4장 보 칙

제11조(준용규정) ①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

□ CCTV 설치 목적 및 현황

1. CCTV 설치의 목적 : 동서울대학교내 범죄 및 사고예방  
시설물안전관리
2. CCTV시설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위치·수량·설치목적

관리 부서	시설물명	현 황		설치목적	운영 시간	
		설치위치	수량			
관리과	본관	출입구, 주차장	5대	방법, 시설관리	24h	
	1호관	출입구, 진입로	4대	방법, 시설관리	24h	
	2호관	출입구, 복도, 강의실	6대	방법, 시설관리	24h	
	3호관	출입구	3대	방법, 시설관리	24h	
	5호관	출입구	1대	방법, 시설관리	24h	
	6호관	출입구	2대	방법, 시설관리	24h	
	7호관	출입구	1대	방법, 시설관리	24h	
	8호관	출입구, 복도, 강의실	25대	방법, 시설관리	24h	
	9호관	출입구, 복도, 강의실	11대	방법, 시설관리	24h	
	10호관	사격장		3대	방법, 시설관리	24h
		출입구, 복도		7대	방법, 시설관리	24h
		야외 휴게 공간		4대	방법, 시설관리	24h
		엘리베이터		2대	방법, 시설관리	24h
	교내 외곽	교정	23대	방법, 시설관리	24h	
미디어센터	도서관	출입구	3대	방법, 시설관리	24h	
		미디어센터	4대	방법, 시설관리	24h	
전산정보센터		전자계산소	2대	방법, 시설관리	24h	
위탁운영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54대	방법, 시설관리	24h	
		엘리베이터	2대	방법, 시설관리	24h	
관리과 (중앙통 제실)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건물 주위	7대	방법, 시설관리	24h	
		건물 내부	66대	방법, 시설관리	24h	
		지하주차장	23대	방법, 시설관리	24h	
		엘리베이터	12대	방법, 시설관리	24h	
<b>합 계</b>			272대			

3.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부착장소
  - 부착장소 : 각 건물 출입구 및 교내게시판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5.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1개월(30일)
  -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경과 자동 삭제
  -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관당직실, 10호관 상황실,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중앙통제실, 지하주차장
6.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담당자 외 출입제한,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동서울대학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7.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별표 2]

□ CCTV 설치 안내판

CCTV 설치안내	
목 적	시설안전관리, 범죄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책 임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